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6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 박주민·박홍배·김남근

남인순 • 박지원 • 이용우

문금주 • 이광희 • 박해철

이용선 · 강준현 · 정진욱

민형배·조 국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인 경우에만 집단소송의 방식을 인정하므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함.

그러나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일정 사건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등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임.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

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 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안 제3조).
- 다.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 라.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 바.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 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 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피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 차. 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

31조).

-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 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2조).
-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1조).
-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안 제62조).
- 너.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소비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
 -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 2.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 3.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 4.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 중 제6호의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5.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 6. "제외신고"(除外申告)라 함은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7.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7.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 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4조(관할) 소비자집단소송은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 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

-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심의 인지액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상고심의 인지액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 5. 총원의 범위
 - ② 제1항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총원의 범위
 - 5.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경력

- 6. 제1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 7.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
-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 2. 총원의 범위
 -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 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③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1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

- 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②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 2. 제3조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 5. 구성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대표당사자의 피해와 동종의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개별구성원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
 -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13조(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른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 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 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의 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 을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5조(소송허가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총원의 범위
 - 5. 주문
 - 6. 이유
 -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 보정 등을 명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

- 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 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 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납이 유예된 소송비용 및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소송불허가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불허가결 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4. 총원의 범위
 - 5.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 11.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9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0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21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소송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

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22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23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①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구성원 10인 이상이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추가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제24조(대표당사자의 전부 변경) ①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 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 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그 소비자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 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 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소비자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소멸한다.
 -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 3. 제28조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1조(당사자신문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 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 제32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33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4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5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36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7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
 - 2. 총원의 범위
 -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 허락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39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 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장 분배절차

- 제40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1조(권리의 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분배관리인)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분배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3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 금액 및 분배할 금액
 - 3.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 5. 권리신고기간, 장소 및 신고방법
- 6. 권리확인방법
-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 8. 분배관리인의 보수
-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5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 ② 분배 및 권리확인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 제46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 2. 권리실행비용
 -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 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 ② 분배관리인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7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 제48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 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제49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공고 하여야 한다.
 - 1. 집행권원의 요지
 -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3. 분배계획의 요지
- 제50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 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53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제54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 주소 및 신고금액
 -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 4. 남은 금액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8조 본문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5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5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 급청구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한다.
- 1. 수령기간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및 분배금액
-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 4. 분배비용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57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 제58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 제60조(추가분배) 제56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 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시행규칙

제6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62조(배임수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다.
 -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 (倂科)할 수 있다.
 -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63조(배임증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제64조(몰수·추징) 제62조 및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 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4호, 제5호, 제7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 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의 현 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